최 신 판 례 예 규

과세관청이 감면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특례제도과-2221, 2019.06.11

◆ **질 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감면결정 통지 후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고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예고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 지 여부

◆ **회 신**

○ 「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형식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고, 그 감면신청을 받은 과세관청은 지방세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 관련 과세관청의 감면결정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소정의 감면신청, 그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무에 관한 법정절차 이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 자문이나 조언 등 단순한 사실행위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납세자가 그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결정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했던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단순한 조언 정도에만 기대어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 이 사건 납세자는 해당 감면조항에 대한 부지 자체보다는 처분청의 감면결정 통지사실을 신뢰하여 그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제반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1650, 2019.06.12

◆ **질 의**

○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지배주주임) 유족보상금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질의

○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66(201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66, 2011.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임원의 선임경위, 수행하는 업무, 사용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마케팅 Tax Consulting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료 매입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동업경영에 해당안됨

주류 제조업의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소비-1481, 2019.07.02

◆ **질 의**

소주 제조면허를 가진 A는 현재 ₩"○○소주"를 제조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소주 제조자 B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소주"의 통상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수취할 예정이며

A로부터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B는 A로부터 ₩"○○소주"의 반제품을 공급받아 본인의 제조장에서 여과·병입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후 통상사용권에 따라 ₩"○○소주"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예정임

질의

주류 제조자 A와 B가 ₩"○○소주"에 대하여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가 주세법 제13조에 따른 동업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B가 A로부터 ₩"○○소주"의 반제품을 매입 후 일정한 공정을 거쳐 자신의 명의로₩"○○소주"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세법 제13조에 따른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주류의 상표명에 잘못된 주종을 표시하거나 과대 선전문구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등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라 할 것이며,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료용 주류를 매입하여 주류를 생산·판매하는 것만으로 동업경영이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363, 2019.08.28

◆ **질 의**

건축법상 용적률 확대허가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지 및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건축법상 용적률의 상향조정 등)를 받는 경우로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